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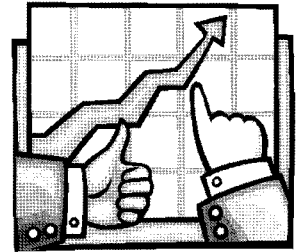


기술표준원

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지원 대책 마련한다.

기업비용 감면, 규제완화 확대, 기술·정보제공 등
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키로 함

기업비용 절감을 위한 시험수수료 감면



1 KS 최초인증 및 정기심사시 제품시험 수수료 20% 감면

- (현황) KS 최초인증 및 정기심사 신청업체는 품질 검사를 위하여 공인시험·검사기관에서 규정한 시험수수료를 납부
 - ※ 관련근거 :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(수수료)
 - ※ KS제품시험을 위한 공인시험·검사기관 :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 등 9개 기관
- (지원내용)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KS제품시험을 위한 공인시험·검사기관과 협력을 통해 '09년도 제품시험수수료 20% 감면
 - ※ 시험기관 자체 시험업무규정에 국가기관이 시험의뢰 및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
- (기대효과) 총 6천여개의 KS인증 업체 중 40%인 2,700 여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5억원의 시험수수료 절감 기대
 - ※ '08년도 KS제품시험관련 수수료 비용 : 총 25억원(4,000여건 실시)
 - ※ 가정용주방용구(싱크대)의 경우 건당 시험수수료가 3백만원 정도로 20% 감면시 60만원 정도의 기업부담 경감

2 계량기 형식승인 시험수수료 20% 감면

- (현황) 전기식지시저울 등 18종의 법정계량기는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미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
 - ※ 관련근거 :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(계량기의 형식승인)

- (지원내용) 형식승인 기관(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,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)과 협력을 통해 '09년도 형식승인 시험수수료 20% 감면
- (기대효과) 총 323개 계량기 제조업체가 지원대상으로, 연간 약 1억원 형식승인 수수료 절감 기대
 - ※ '08년도 형식승인 수수료 비용은 약 5억원정도(1,000여건 실시)

⇒ 시험기관에서 3.13일(금)부터 시험수수료를 20%감면함

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확대

1 2009년도 KS 제품심사 대상 품목 대폭 축소

- (현황) 매년 공공의 안전과 일정 품질 수준 유지를 위하여 KS인증 품목 중 제품심사 대상품목을 선정하여 고시
 - ※ 산업표준화법 제26조에 의해 검사·검정·시험·인증·형식승인이 면제되는 품목이나,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품목에 한해 제품심사를 실시
- (지원내용) 극히 공공의 안전과 연관되고 불합격율이 높은 품목에 한해 '09년도 제품심사를 실시토록 대상품목을 축소 재고시
 - ※ '09.1월에 '09년도 제품심사 대상으로 140품목을 선정·고시하였으며, 이중 30%인 40여 품목을 제외함
 - ※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제품심사 대상품목은 축소하는 대신에 불량 KS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시판품 조사는 확대
- (기대효과) '09년도 제품심사 대상은 3,200여개 업체로 이중 1,000여개 업체가 제품심사 면제 혜택을 수혜

⇒ 3월 16일부터 '09년 KS 제품심사 대상품목을 축소하여 실시

2 계량기 검정시 적용되는 샘플링 방식 개선

- (현황) 계량기 초기 검정시 오차검사를 실시할 경우 “계수치 샘플링 검사 절차”의 보통 1회 샘플링 검사방식을 적용
- (지원내용) 일정 기간 검정결과가 좋은 기업에 한해 보통검사 샘플링방식을 수월한 검사방식으로 적용하여 검정시간 단축
- (기대효과) 보통검사에서 수월한 검사로 변경시 계량기 검정 소요 시간이 50% 단축
 - ※ 보통검사시 약 14시간(2일)정도가 소요되었으나, 수월한 검사시 약 7시간(1일)으로 처리 가능

⇒ 3월 초부터 개선된 계량기 검정 샘플링 방식을 적용하여 시행 중



③ 공산품 안전인증제품의 정기심사 면제 확대

- (현황) 공산품 안전인증제품의 경우 연 1회의 정기심사 대상이며, 2년 연속 자체검사가 우수한 기업에 한해 다음해 정기심사를 면제
- (지원내용) [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]을 개정하여 정기심사를 연 1회에서 격년제 실시로 변경
- (기대효과) 공산품관련 700여 전체 업체가 지원 대상이며, 약 14억원 기업 비용 절감 효과
 - ※ 1업체당 정기검사비용 약 2백만원 소요 기준

⇒ 상반기 품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시행 계획

④ 전기용품에 대한 [자율안전확인제도] 도입

- (현황) 247종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(제품시험+공장심사, 연1회 정기검사 적용)을 받은 제품만 판매를 허용하는 안전인증제도를 운영
 - ※ 연 1회 정기검사 적용에 대한 기업 부담 가중 및 최근 다양한 신제품 보급 증가 등으로 기존 인증제도만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
- (지원내용) 작년 [전기용품안전관리법령] 개정을 통하여 전자제품·IT 제품 등 위해수준이 낮은 제품은 안전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만 받으면 신고 후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
 - ※ 유사기능 제품을 통합하여 안전관리대상을 148종으로 조정하고, 이 중 위해수준이 낮은 95종을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
- (기대효과) 안전인증을 받은 42천여개 모델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전환된 약 3천업체(2만여개 모델)가 정기검사 면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연간 약 60억원 기업 비용부담 절감 효과
 - ※ 1업체당 정기검사비용 약 2백만원 소요 기준

⇒ 1월 초부터 전기용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제도 도입 시행 중

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술·정보 등 제공

① 기술표준원 무료 개방시험실 운영

- (현황) 기술표준원에서 현재 보유한 장비 중 중소기업에서 활용도는 높으나 구입하기 어려운 약 90여종의 고가·고정밀도의 장비를 운영하고 있음
- (지원내용) 기술표준원내 20여개의 개방시험실을 운영하여 기업, 학교 등에서 시험장비의 무료 사용과 더불어

전문인력도 지원

- (기대효과) 중소기업의 연구 장비 투자 예산 절감 및 국가인프라 자원의 활용 효율성 제고
- ※ 인체측정스캐너의 경우 장비값이 7억여원 정도로 옷·신발·가구 등의 업체에서 연간 70회 이상 이용

⇒ 3차원 인체측정스캐너 등 일부시험장비는 개방 중이며, 3월 중 전면 개방 계획

② 해외기술규제 애로 해결 및 정보 제공

- (현황)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TBT중앙사무국을 발족('08.9.29)하여 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중이나 입수가 어려운 통보문수가 많고 지원도 미흡
- ※ 정보제공을 받는 기업수가 제한적이고 콘텐츠도 부족
- (지원내용) 해외 현지에서 실시간 TBT 입수·처리 시스템 구축 및 해외기술규제 대응 지원
- (기대효과) TBT에 대한 기업 사전 대응체계를 확보하여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국내기업의 피해 감소

③ 제품안전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제공

- (현황) 중소기업은 신제품·안전위해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기술이 취약하여 안전위해 사례가 해마다 급증
- (지원내용) 제품안전기술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여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안전취약 부품 및 기술 개발을 지원
- (기대효과) 생산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신종 위해제품에 대한 안전기반 조성
- ※ “유해물질 없는 학용품(지우개, 크레파스 등) 개발” 등 안전위해 우려제품의 안전 명품화를 위해 매년 30여개 기업에 지원 계획

④ 비법정계량단위에 대한 단속강화보다 대국민 홍보 및 계도

- (현황) 평·돈·근·야드·인치 등 정부, 언론 등 사회전반에 걸쳐 비법정계량단위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어 상거래질서 혼란 초래
- ※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없음
- (지원내용)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비법정계량단위 미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지양하고 행정지도 및 대국민 홍보
- ※ 계량에 관한 법률 제48조/제51조에 의해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·수입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/500만원 이하 벌금 및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자에게 대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할 수 있음
- (기대효과) 법정계량단위 미사용으로 인한 벌금·과태료 부과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부담 완화